

수급자격 인정 철회 · 취업지원 중단 통지서

수급자격자 (수급자)	성명			
	주소			

수급자격	인정받은 수급자격	[] 취업지원서비스	[] 구직촉진수당	
	인정일	년	월	일
	철회일 (취업지원 중단일)	년	월	일
	철회사유 (취업지원 중단사유)			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·제21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거나 취업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되며,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종료일부터 3년 동안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안내

-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심사 청구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.

담당자() 전화번호() 팩스번호()